



의안번호	제 2021 - 21호
보 고 연 월 일	2021. 10. 8. (제11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42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
1. 개관	2
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현황	2
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3
다. 양형자료조사 결과	4
2.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5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5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6
3.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8
가.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8
나. 구체적 유형 분류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8
다. 검토 결과 요약	13
III.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	18
1. 양형위원회 제111차 회의 결과	18
가.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18
나. 양형인자의 정의	18
2. 범죄군별 분류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19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19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20
3. 추가 정비 사항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26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26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피해 회복 없음’ 등 삭제 여부	27
4. 양형인자 정의 규정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의견 일치	29
5.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의견 일치 · 30	
 IV. 향후 일정	 30

【별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 설정대상, 유형분류” ■ 최재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대상, 유형분류] 검토 의견” ■ 백광균, “범죄별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 정비 방안” ■ 백광균, “범죄별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 정비 방안-별지-” ■ 유관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방안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 |
|--|



I. 제142차 전체회의

1. 일시 · 방식

- 일시 : 2021. 9. 13.(월) 15:30 ~ 18:3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2. 참석자(전문위원 14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재신, 이형일,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방안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

II.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현황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제6조, 제7조 적용대상 여부	대표죄명 법정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7년 ↓
	나목	형법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의 죄 등	○	○	3년 ↓
	다목	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의 죄 등	○	○	5년 ↓
	라목	형법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3년 ↓
	마목	형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등	○	○	10년 ↓
	바목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3년 ↑
	사목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등	○	×	5년 ↓
	아목	형법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	3년 ↓
	자목	형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의 죄 등	○	○	5년 ↓
	차목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10년 ↓
	카목	형법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 손괴등)의 죄	○	×	3년 ↓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2호만)	○	5년 ↓
	파목	가목부터 타 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 또는 ×	
	하목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학대살해 제외)	○ (아동학대살해 제외)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구성되는데, 그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는 제71조 제1항 제2호(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됨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 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제4호(유해곡예)는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 3. 16. 신설됨

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개정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4조(아동학대치사) <신 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양형자료조사 결과

○ 2011년~2020년 선고 사건 건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세부죄명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2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	1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37	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15	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8	234	2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6	216	23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방조	-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0	692	702
	소계	36	1,198	1,234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감금)	-	2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감금치상)	1	-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상해)	2	7	9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영아유기)	-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상해)	2	1	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학대)	-	2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5	276	28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1	-	1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59	-	59
	소계	80	289	369
형법	영아유기	-	73	73
	영아유기치사	16	-	16
	유기	-	7	7
	유기치사	7	1	8
	학대	-	1	1
	학대치사	4	-	4
	학대치상	-	1	1
	소계	27	83	110
전체	143	1,570	1,713	

○ 양형기준 구분에 따른 연도별 대상사건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형		선고연도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수	14	10	8	10	7	17	8	7	4	8	93
		비율	15.1	10.8	8.6	10.8	7.5	18.3	8.6	7.5	4.3	8.6	100.0
	제2유형	수	11	11	33	51	103	184	273	264	298	275	1,503
		비율	0.7	0.7	2.2	3.4	6.9	12.2	18.2	17.6	19.8	18.3	100.0
	소계	수	25	21	41	61	110	201	281	271	302	283	1,596
		비율	1.6	1.3	2.6	3.8	6.9	12.6	17.6	17.0	18.9	17.7	100.0
유기·학대(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	-	-	1	-	-	-	-	-	-	1	
	비율	-	-	-	100.0	-	-	-	-	-	-	100.0	
유기·학대(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1	3	7	3	4	1	-	3	4	2	28	
	비율	3.6	10.7	25.0	10.7	14.3	3.6	-	10.7	14.3	7.1	100.0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	제1유형	수	-	-	-	-	-	2	3	2	1	3	11
		비율	-	-	-	-	-	18.2	27.3	18.2	9.1	27.3	100.0
	제2유형	수	-	-	-	-	-	9	14	3	14	19	59
		비율	-	-	-	-	-	15.3	23.7	5.1	23.7	32.2	100.0
	소계	수	-	-	-	-	-	11	17	5	15	22	70
		비율	-	-	-	-	-	15.7	24.3	7.1	21.4	31.4	10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감금)	수	-	-	-	-	-	-	3	-	-	-	3	
	비율	-	-	-	-	-	-	100.0	-	-	-	100.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매매)	수	-	-	-	3	1	6	4	-	1	-	15	
	비율	-	-	-	20.0	6.7	40.0	26.7	-	6.7	-	100.0	
전체	수	26	24	48	68	115	219	305	279	322	307	1,713	
	비율	1.5	1.4	2.8	4.0	6.7	12.8	17.8	16.3	18.8	17.9	100.0	

2.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1)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하여 추가로 포함할 범죄

-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카목(재물손괴) 등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 가중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 있음

③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가목(상해 등), 라목(협박 등), 바목(강간 등),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차목(공갈 등), 카목(재물손괴) 등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에 대한 가중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 있음

④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2)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범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유해곡예)

- 1960년대까지 존재하였던 아동에 대한 곡예행위 금지 규정으로, 사회 변화와 함께 사문화됨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1) 제외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10인)

- 영아유기 후 살해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처벌법 해석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도입된 이상 영아살해죄의 성립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영아살해죄는 그 대상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대 범죄에서 필요한 학대 경향 내지 지속성(반복성)이 있기 힘들. 또한 영아살해의 동기 역시 치욕은 폐, 양육 불가 예상 또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필요하므로, 학대와는 반대 방향의 동기가 있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는 어울리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규정에도 나열되지 않았음
- 살인범죄의 가중요건인 존속살인도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있음. 이와 균형상 살인범죄의 감경요건인 영아살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다면 역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함

(2) 포함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3인)

- 영아살해의 직전 단계 범행이라 볼 수 있는 영아유기(형법 제 272조)는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죄질이 더 큰 영아살해 역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학대의 극단적인 형태가 살해이므로, 아동학대살해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이상 영아살해 역시 함께 동일한 양형기준에서 정함이 타당
- 검찰 사건 접수 기준 10년간 구공판 85건으로, 같은 기간 영아유기 사건 수 73명,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59명보다 많음
- 영아살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음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3.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 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나. 구체적 유형 분류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가) 별도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음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산재해 있고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다양하므로 각 행위태양별 범죄의 양형기준 내에서 양형인자 추가 등으로 반영이 가능하고, 실제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는 그와 같이 대응하여 왔음
-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할 경우, 위 기본범죄들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 및 유형분류의 수만큼 범죄유형이 과생되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개별적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누락된 범죄군은, 해당 범죄군(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반영함

(나)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는 별도 대 유형으로 분류함

- 현행 ‘유기·학대’ 대유형의 하위 범주에 있는 아동학대범죄 유형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대유형으로 옮겨 분류함

-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사안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 등의 경우 형법상 유기·학대로 처벌되기보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되고 있음. 형법상 유기·학대에 비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법정형이 더 높으므로(형법상 유기 3년↓, 학대 2년↓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10년↓,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5년↓), 이를 유형 분류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 있음
 -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 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새로 포함한다면, 행위태양과 법정형의 차이,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71조 제1항 제2호(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와 함께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대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현행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01. 체포·감금	01. 체포·감금
02. 유기·학대	02. 유기·학대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03. 아동학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대유형 중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중유형, 소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p>현행 양형기준 중 03.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p>	<p>수정 양형기준 중 03. 아동학대</p>
<p>(중유형 없음) (소유형)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p>	<p>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1. 매대, 성적학대 2.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살해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자는 소수 의견 있음 [아래 (2) 부분 논의 참조]</p>

※ 다만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1.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매대’와 ‘성적 학대’는 향후 권고 형량범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두 범죄의 선고형량 분포 등을 분석한 이후 이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유형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함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아동학대살해죄를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대유형에 분류하여 규정할지,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분류하여 규정할지

(가)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대 유형에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12인)

-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살해가 포함될 만한 적절한 소유형을 찾기 어려움. 즉, 살인범죄는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그 체계에 맞지 않음
-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분류한다면, 그 소유형에 분류되는 범죄가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등 유기징역형이 아닌 범죄들이라는 점과 충돌함. 즉,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바,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과는 법정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
- 방화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와 함께 규정하고 있음. 즉, 고의 살인 범죄도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나)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중대범죄 결합 살인’ 소유형에 분류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1인)

- 국민의 관심이 큰 아동학대살해를 양형위원회 역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으로 분류된 다른 범죄들과 법정형이 다르긴 하나, 이는 범죄 결합 살인 형태로 구성요건이 정해진 범죄가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우연한 결과임

- 학대의 대상이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야 함. ‘아동학대’ 대유형에서 규정한다면, 그러한 확장 가능성을 대비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요약

(1)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수정 사항 (설정 범위, 유형 분류)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체포·감금

(현행 양형기준에서 변동 없음)

02¹ 유기·학대

(현행 양형기준에서 변동 없음)

03¹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매매, 성적 학대			
2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다만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소유형 1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매매’와 ‘성적 학대’는 향후 권고 형량범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두 범죄의 선고형량 분포 등을 분석한 이후 이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유형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함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살해를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분류하자는 소수 의견에 의할 경우 '아동학대살해' 소유형은 생략

(나) 유형의 정의

01¹ 체포·감금

(현행 양형기준에서 변동 없음)

02¹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 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 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03¹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매매, 성적 학대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72조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2조
제2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2조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72조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제72조
	구결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72조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2)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사항 (유형의 정의)

○ 다음 사항을 [유형의 정의]에 추가함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 내지 제○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목, ○목, 파목(○목, ○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p>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목, ○목, 과목(○목, ○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p>	<p>아동학대처벌법 제7조</p>

Ⅲ.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

1. 양형위원회 제111차 회의 결과

가.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의 인정 여부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1-1항 또는 1-2항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
-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2-1항 또는 2-2항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

나. 양형인자의 정의

(1)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2)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2. 범죄군별 분류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구분	범죄군
1-1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1-2	성범죄 (1, 2유형)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p>[요약]</p> <p>■ 살인범죄</p> <p>① 다수 의견(10인): 1-1 범죄군</p> <p>② 소수 의견(3인): 1-2 범죄군</p> <p>■ 성범죄 중 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p> <p>① 다수 의견(9인): 1-1 범죄군</p>

② 소수 의견(4인): 1-2 범죄군

■ 위증·증거인멸범죄와 무고범죄

① 다수 의견(9인): 모두 2-2 범죄군

② 제1 소수 의견(3인): 위증·증거인멸범죄는 2-2 범죄군, 무고범죄는 2-1범죄군

③ 제2 소수 의견(1인): 위증·증거인멸범죄 중 1유형(위증), 무고범죄는 2-1 범죄군, 위증·증거인멸범죄 중 2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은 2-2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범죄

① 제1 의견(7인): 2-2 범죄군

② 제2 의견(6인): 2-1 범죄군

■ 배임수증재범죄

① 제1 의견(7인): 1-1 범죄군

② 제2 의견(5인): 1-2범죄군

③ 제3 의견(1인): 2-2 범죄군

(1) 살인범죄

(가) 다수 의견(10인): 1-1 범죄군

-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처벌불원」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고, 피해자 자신이 아니라 유족의 피해 회복이 문제되므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소수 의견(3인): 1-2 범죄군

- 살인 범죄는 개인적 범익 중에서도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

로서 '생명'은 일단 침해된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법익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란 개념을 상정할 수 없음. 더욱이 가족 구성원을 영구히 상실한 유족의 용서 없이, 일정한 경제적 보상(공탁 등)을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 평가하여, 처벌불원과 동등한 위상의 양형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성범죄 중 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다수 의견(9인): 1-1 범죄군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3유형)는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처벌불원」과 동등하게 평가해왔고, 피해자 자신이 아니라 유족의 피해 회복이 문제되므로, 다른 범죄군의 살인, 치사 범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소수 의견(4인): 1-2 범죄군

- 1유형, 2유형의 경우 '피해자 자신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2 범죄군으로 분류하면서, 3유형에 대하여만 '피해자 자신이 아닌 유족의 피해 회복'이 문제라는 이유로 1-1 범죄군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보다 중한 범죄에 대하여 더 쉬운 감경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고, 사회 일반의 정의와 법감정, 형평에 반함

(3) 위증·증거인멸범죄와 무고범죄

(가) 다수 의견(9인): 모두 2-2 범죄군

- 위증·증거인멸범죄는 증인, 증거의 진실성, 완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징계 절차의 신뢰성, 공정성을 우선 보호하되, 피고인과 피해자(형사), 원고와 피고(민사) 등 관련 당사자 개인의 권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범죄
- 위증·증거인멸죄는 이미 개시된 사법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범행인 반면,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는 오히려 무고죄의 경우가 더욱 강하므로, 무고범죄를 2-1 범죄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나) 제1 소수 의견(3인): 위증·증거인멸범죄는 2-2 범죄군, 무고범죄는 2-1범죄군

- 무고범죄는 특정인에 대한 「형사·징계처분」이라는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고, 이에 따라 고소, 고발, 신고의 대상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하며 구체적 피해 또한 뒤따르기 마련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그 가벌성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리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로써 피해 회복도 촉진 가능함
- 종전에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하였고, 일반감경인자라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이어 2번째로 빈번함

(다) 제2 소수 의견(1인): 위증·증거인멸범죄 중 1유형(위증),

무고범죄는 2-1 범죄군, 위증·증거인멸범죄 중 2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은 2-2 범죄군

- 위증범죄, 무고범죄는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는 방향은 동일하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강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반면, 증거인멸은 특정한 피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므로 2-2 범죄군으로 분류하여야 함

(4) 공무집행방해범죄

(가) 제1 의견(7인): 2-2 범죄군

- 만약 2-1 범죄군으로 분류하게 되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게 되는바, 이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방해 행위가 단순한 금전 공탁만으로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함
- 현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들(특히 경찰관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중에 폭행을 당하고도 정액 공탁금만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공용물파괴에서 처벌불원의 주체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의문임

(나) 제2 의견(6인): 2-1 범죄군

- 주요 기본 범죄인 폭행, 협박이 반의사불벌죄인 이상, 가중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서

존중할 필요성이 높음

- 관례 역시 폭행, 협박 대상인 공무원마다 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큼 그 개인 법익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 있음
- 「처벌불원」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특별감경인자 중 1번째, 공무집행방해의 일반감경인자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이어 2번째로 빈번함

(5) 배임수증재범죄

(가) 제1 의견(7인): 1-1 범죄군

- 피해자의 재산이라는 개인 법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범죄로서 특정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는 보기 어려움
- 수재자가 증재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나아간 경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도 유의미할 수 있고, 이를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수재자 또는 증재자가 진정한 사과 또는 일정한 보상 조치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수재자와 증재자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

(나) 제2 의견(5인): 1-2 범죄군

- 배임수증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실

질적 피해 회복 여부의 판단도 어려운 일임. 예를 들어, 피고인이 돈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면 기업의 실질적 피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움

- 배임수증재는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재산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것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범죄임.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으나, 배임수증죄의 구성요건에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봄이 타당함

(다) 제3 의견(1인): 2-2 범죄군

- 배임수증재는 재산범죄로 분류하기 어렵고, 부패범죄와 유사하게 배신성에 책임의 주요 부분이 있는 것임.
- 개인적 법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사회적 법익에 부수적인 것으로 파악하여야 함

3. 추가 정비 사항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각각 일반가중인자로만 설정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1-1, 1-2, 2-1,

2-2 범죄군)에서는 성격을 불문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1-1, 1-2, 2-1, 2-2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범죄뿐 아니라 재산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 범죄에서도 피고인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이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이므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
-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강요죄뿐 아니라,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발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니, 그 명칭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정의 규정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피해 회복 없음' 등 삭제 여부

(1) 현황

- 「피해 회복 없음」은 살인미수, 절도, 장물에서, 「미합의」는 횡령·배임, 사기, 공갈에서, 「피해 미변제」는 지식재산권에서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은 강도, 횡령·배임, 무고, 사기, 공무

집행방해, 식품·보건, 폭력, 교통, 공갈, 방화,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채권추심법 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서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은 공문서, 사문서, 지식재산권, 디지털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 다수 의견(9인): ‘피해 회복 없음’ 등 일괄 삭제

- 양형인자가 아니면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이므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위상별로 대응시킨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정비할 필요 있음
-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는 당연히 따를 것이기에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는 범죄의 결과 그 자체, 즉 기본 값이므로 이것만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하면, 범죄 발생 자체만으로 양형을 가중하는 셈이 됨
- 종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성격, 범행의 수법 등 한 가지 요소에서는 가중, 감경인자 중 하나만 설정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취해왔음. 체계 일관성은 물론 양형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괄 삭제가 바람직

(3) 소수 의견(4인): ‘피해 회복 없음’ 등 요소 현행 유지

-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여부는 그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더 강하게 고려하여야 함
-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서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서는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

- 모든 범죄군이 아닌 일부 범죄군 양형기준에만 그 범죄군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피해 회복 없음'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한 것인바, 이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함

4. 양형인자 정의 규정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의견 일치

- 원칙적으로 양형위원회 제111차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정의 규정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한 정의 규정을 적용함
- 다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중 선거범죄, 명예훼손범죄의 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현행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예시로 든 내용을 반영하여, 양형위원회 제111차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에 일부 문구를 추가함
- 선거범죄 중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명예훼손범죄 중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5.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에 관한 전문위원단 검토 결과: 의견 일치

-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각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역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IV. 향후 일정

- 일시 : 2021. 11. 22.(월) 15:30 ~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검토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권고 형량범위)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른 각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